내부통제기준 개정취지 및 신구조문대비표

2026. 6. 12.

1.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

- **제33조(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)**
 - 단일종목 레버리지(+/- 2배 이내) ETF("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") 및 ETN("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")을 금융투자협회 「표준내부통제기준」 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당사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하고자 함

2.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33조 (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) ①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(이하 이 조에서 "금융투자상품"이라 한다.)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	**제33조 (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)** ①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"금융투자상품"이라 한다)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	단일종목 레버리지 ETF·ETN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으로 추가